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진정 기자회견 자료집

○ 기자회견 순서

-사회: 허진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 활동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법적대응 경과 브리핑:

김인숙(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단장,
민들레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제도 개관:

류다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

-피해자 진정서의 내용 개관:

신의철(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법무
법인 율립 변호사)

-피해자(진정인) 2인 발언

임준우(국가정보원 민간인사찰 대책위원회)

최승제(국가정보원 민간인사찰 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연대 발언

이은미(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질의응답

[첨부자료1] 법률지원단 대응 경과

○ 주요 사건 일지

▲ 2019. 8. 23.

제보자, ‘통일경제포럼’ 회원인 선배에게 양심고백

▲ 2019. 8. 26.

제보자, 언론을 통해 민간인사찰 및 사건조작 폭로

▲ 2019. 9. 3. ~ 10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진상조사팀(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3일에 걸쳐 제보자의 진술 청취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 2019. 9. 4.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신변보호 요청에 대한 신변보호 결정

▲ 2019. 9. 24

시민사회단체,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발표
제보자, 국정원에 본인 작성 진술서 및 진술조서 정보공개청구

▲ 2019. 9. 26.

국민권익위원회 민간인 불법사찰 및 특활비 불법사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

▲ 2019. 10. 7.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피해자 및 시민단체를 대리하여 서운 현 국정원장 등 15명에 대한 고소·고발장 접수

▲ 2019. 10. 11

국정원 제보자의 정보공개청구 거부 통지

▲ 2019. 10. 16,

검찰, 제보자 휴대폰 등 포렌식 절차 진행

▲ 2019. 10. 18 ~ 12. 30.

검찰, 제보자에 대한 5차례 조사 진행

※ 현재까지 관련 책임자에 대한 강제수사 또는 징계조치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고소·고발의 요지

①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 국정원 수사관들(이하 편의상 ‘국정원’ 이라 함)은 제보자에게 2014. 10.경부터 2019. 8경까지 약 123회에 걸쳐 대략 160,000,000원 정도의 돈을 지급함과 동시에 ‘통일경제포럼’ 운영진으로 활동하게 하면서 민간인을 사찰하도록 지시하는 등 제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사찰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및 인격권 등 중대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음.
- 국정원은 ‘대공 수사’ 라는 직무 수행을 명목으로 민간인인 제보자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는 사찰 피해자들의 정보를 수집할 것과 도청, 비밀 녹음, 비밀촬영(CCTV 설치) 등 위법한 방식으로 정보수집을 지시하는 등 현행 법이 허용할 수 없는 사찰행위를 지시하였음.
- 국정원의 위 행위는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국정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혐의가 전혀 없는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이를 통해 조작 사건을 기획하려 한 것으로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한 것임. 이는 결국 직권을 남용하여 사찰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국가정보원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권남용죄에 해당함.

②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및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

- 국정원은 제보자에게 사찰 피해자들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할 것과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였음. 위와 같은 지시는 국정원이 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찰 피해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기획하여 무고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임.

-국정원의 위 행위는 사찰 피해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거나 증거를 날조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제12조의 무고, 날조죄 및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함.

-또한 국정원이 위 진술서 및 진술조서를 근거로 법원의 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음.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

-국정원은 제보자를 포섭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로 유흥비를 지출하였고, 불법적인 성매매를 자행하였으며, 허위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 작성을 대가로 제보자에게 현금을 지출하였음.

-국정원의 위 행위는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에따른 국고 등 손실죄에 해당함.

④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국정원은 제보자를 포섭·회유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유흥업소, 불법안마시술소 등에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를 하였고,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대부분 특정 신용카드로만 결제한 것으로 확인됨. 이처럼 국정원 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 또한 직접 성매매를 한 것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성매매, 알선 금지행위에 해당함.

⑤ 피고발인의 공범 여부: 공동정범의 성립

-피고발인들의 조직에서의 지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발인들 중에서는 직접 전체 모의과정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고를 받거나 결재를 통해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이처럼 피고발인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발인들은 ①~③항의 혐의의 공동정범에 해당함.

○ 향후계획

- (2020년 1~2월 중) 국가 및 국정원 직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임
-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주체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제보자도 포함될 예정이며, 법원을 통해 증거 등을 확보하여 국정원의 위법행위 및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계획임
- 국정원이 제보자를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결국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인간의 존엄성 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임
- 위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국정원의 ‘프락치’를 이용하는 사찰의 위법성을 다투는 첫 사례가 될 것임

[첨부자료2]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개인진정 절차 및 효과에 관한 개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개인진정 절차 및 효과에 관한 개관

류다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

- 유엔 인권시스템의 경우 크게 조약감시기구와 특별절차의 개인진정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번 진정서 제출은 특별절차의 개인진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
- 진정이 가능한 특별절차는 아래와 같고, 이번 진정서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종교 또는 믿음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테러방지과 인권보장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각 전달될 예정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종교 또는 믿음의 자유/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비사법적 살인/ 현대적 노예제/ 강제실종/ 고문/ 자의적 구금/ 프라이버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주거권/ 문화권/ 교육권/ 빈곤/ 식량권/ 건강권/ 유해물질 / 안전한 식수와 위생/ 환경권/ 개발권
특정 그룹	인권옹호자/ 선주민/ 국내난민/ 이주민/ 노인/ 여성폭력/ 아프리카 후손들/ 법과 관행상 여성차별/ 소수민족/ 장애/ 알비니즘/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한센병
기타 주제	아동매매, 성매매, 포르노그래피/ 진실, 정의, 회복 및 재발 방지/ 인종주의/ 테러방지과 인권보장 / 인권과 국제연대/ 인신매매/ 용병/ 기업과 인권/ 민주주의와 평등한 국제질서 / 외채/ 일방적인 강제조치
국가	벨라루스/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리트레아/ 이란/ 말리/ 미얀마/ 1967이래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1993년 설립되었으며, (a)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된 정보 수집, (b) 정부 및 비정부기구로부터 신뢰할 만한 정보 습득 및 대응, (c) 더 나은 의사·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권고 및 대안 제시, (d)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OHCHR의 기술적 지원 조항에의 기여 등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종교 또는 믿음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1986년 설립되었으며, (a) 국내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 종교 또는 믿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단 증진, (b) 종교 또는 믿음의 자유를 누리는 데 대한 장애물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권고, (c) '종교 또는 신념에 기반한 불관용과 차별 철폐 선언'의 조항에 위배되는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지속적 검토 및 구제조치 권고, (d) 정보 수집 및 권고 과정에서 젠더적 관점 적용 등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2015년 설립되었으며, (a) 사생활권에 관한 국제적 및 국내적 정보 수집, 현황 연구, 신기술로 발생하는 문제 개선을 위한 권고, (b) 정부, 유엔, 시민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정보 수집 및 대응, (c) 사생활권 보호에의 문제점 파악 및 유엔 인권이사회에 디지털 시대의 문제점에 대한 제안서 및 권고 제출, (d) 관련 국제컨퍼런스 참가, (e) 프라이버시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f) 젠더 관점 반영, (g) 세계인권선언 12조 및 자유권규약 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권 침해 혐의에 대한 보고, (h)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 연례보고서 제출 등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테러방지과 인권보장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05년 설립되었으며, (a) 테러방지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권고 제공, (b) 테러방지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혐의에 관해 정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정보 수집, 청구 및 교환, (c) 업무에서 젠더적 관점 반영, (d) 테러방지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한 모범사례 발굴 및 장려, (e)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타 유엔특별보고관과 긴밀히 협력, (f) 정부, 관련 유엔 기관 등과 정기적인 대화기회 개발, (g)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 정기보고 등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 특별절차 개인진정의 대상이 되는 인권침해는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발생 중인 것인지, 발생가능성이 있는지를 불문하며, ①피해자, ②가해자, ③진정을 제출하는 개인이나 단체, ④해당 사건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⑤해당 사건의 구체적 설명 등의 정보만을 특정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됨

- 특별보고관은 진정이 접수되면, 진정서에 대한 신뢰성을 심사 후 해당 정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함. 그리고 향후 개입(①연례보고서에 기재, ②의견표명, ③해당사항 조사)여부를 결정함. 나아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해당 정부에 긴급조치(urgent appeals)를 요청할 수 있음

- 특별절차는 조약감시기구의 개인진정절차와 비교해보았을 때 ①해당 국가의 관련 조약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 ②다양한 주제별, 국가별 특별절차의 존재로 인하여 조약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점, ③국내구제절차이행의 완료를 요구하지 않아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특별보고관도 해당국가에 대한 질의나 성명 발표 등을 통해 긴급한 사안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음

[첨부자료3] 피해자 진정서 요지

피해자 진정서 요지

법무법인 율림 신의철 변호사

I. 당사자의 지위

- 진정한 최승제 : 통일경제포럼 대표, 경상대 교수
- 진정한 임준우 : 통일경제포럼 회원, 회사원
- 통일경제포럼은 통일경제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연구하는 진보적 학술 단체

II. 국정원 권한남용의 역사

- 국정원은 취급 정보와 직무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음
- 그럼에도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정원으로 이어진 정보기관은 대공수사를 명목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안사건을 조작해 왔음
- 1999년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개혁’ 되었으나 정치공작과 대공사건 조작행위는 여전함
- 국정원은 일련의 불법행위들이 대공수사의 명분 아래 행해진 적법한 행위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III. 사실관계

A. 사건의 요지

- 국정원은 2014. 10.경부터 2019. 8.경까지 약 5년 동안 제보자를 ‘프락치’로 이용하여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자행함
- 나아가 국정원은 사찰한 피해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몰아가기 위해

제보자에게 총 100회 이상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3회 이상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음

B. 국가정보원의 구체적 범죄 행위

-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조작을 위한 사찰 지시
- 사찰 장비 지급과 혐의 없는 사람에 대한 사찰 지시
- 가상의 ‘지하혁명조직’ 창설 및 사건 조작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조작
- 대가성 자금 및 불법적 자금 지급 회유, 룸살롱 접대 및 성매매 강요

IV. 국제인권법의 위반

A. 국가정보원의 국가보안법의 악용

-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차례 폐지·개정 권고를 받은 바 있고,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도 폐지를 권고한 악법에 해당함

※ 관련 권고

“사상이 적국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단지 일치한다거나 적국에 대한 공감을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 사상의 표현을 제한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라” (CCPR/C/KOR/CO/4, para 49)

- 국가보안법을 근거한 사찰행위와 사건조작 행위는 결국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조직하기 위한 범죄행위로 정당화될 수 없음

B. 의사와 표현의 자유 침해

-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및 자유권규약 제19조 및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위반

※ 관련 기준:

“단지 국가안보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미약한 근거를 토대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음” (E/CN.4/1996/39/Add 1, para 16)

C. 양심과 신념의 자유 침해

- 세계인권선언 제18조 및 자유권규약 제18조 및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위반

※ 관련 기준:

“신념에 근거한 편협성, 고정관념, 오명, 차별 및 폭력에 대한 선동 등은 의사와 표현의 자유 및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동시에 침해하는 것” (A/HRC/31/18, para 73)

D. 프라이버시권 침해

○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자유권규약 제17조 및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위반

※ 관련 기준:

“국가가 사생활에 개입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국내법에 근거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 국가가 수집할 수 있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사회의 핵심적 관심사항에 해당해야 함”

E.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한 억압적, 안보적 시각에 기초한 조치

○ 국제인권법이 금지하는 ‘억압적·안보적 시각에 기초한 조치’에 해당

※ 관련 기준:

“테러 및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국가의 조치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둔 조치여야 하고, 억압적·안보적 시각에 기초한 접근방식은 인권침해 등 역효과를 불러일으킴” (A/HRC/31/65)

F. 차별적 프로파일링 및 적법절차의 원칙 위배

○ 국제인권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프로파일링’에 해당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사찰을 하면서 통지권 등을 대상자에게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 관련 기준: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적 프로파일링이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하는 것” (A/HRC/4/26)

“감시리스트 또는 프로파일링에 포함된 개인은 자신이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감시의 대상에 포함되었는지를 통지받고 시정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함” (A/HRC/13/37)

V. 결론 및 요청사항

- 철저한 진상조사 : 강제수사를 통한 조속한 증거확보 및 신속한 수사, 민간인사찰 및 조작행위에 대한 전수조사 및 조사결과 공개
- 책임자 엄벌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
- 재발방지대책 마련 : 프락치 활용금지, 감시리스트 삭제, 국정원의 국외정보 수집기관으로의 개편 및 민주적·독립적 감독체계 마련, 국가보안법 폐지

[첨부자료4] 피해자 발언문 1

피해자 발언문 1

임준우(국정원 민간인사찰 피해자 대책위원회)

이 사건이 세상에 밝혀지기 전까지는 제 개인의 일상이 누군가에 의해 들여다보여지고 감시당하는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 수 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제가 활동하는 통일경제포럼이란 단체에서 만나서 친해진 후배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안은 제가 그 친구와 개인적으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 모임을 함께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또 한 번 깊은 좌절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는 회사에 취직 후 직장생활을 해오다 일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보단 사람들과 만나면서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고 하던 차에 통일경제포럼이란 단체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시민위원회 사람들과 독서모임을 함께 하면서 책 얘기, 살아가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프락치’ 활동을 한 후배의 진술에 의하면, 지하에서 암약하던 지하혁명조직원이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공개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거짓 각색되었고, 그 후의 저의 모든 행적들은 지하혁명조직원의 활동으로 꾸며졌습니다.

제가 단지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통일경제포럼에서 독서모임을 하고,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저의 말과 활동들은 국정원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각색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통일경제포럼의 단순한 접경지 답사 기행에 참가한 것이 북의 공작원과 접선하는 것으로 꾸며졌다는 얘기는 너무 현실감이 없어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5월에 회사업무로 원료시장 조사 차 중국 상해의 박람회를 다녀온 것도 국정원 직원들이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제 생활 하나하나가 그들에 의해 감시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지 그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무슨 권리로 제 생활을 일일이 감시하고 사찰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지금도 문득문득 누군가에 의해서 제 일상이 감시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저도 모르게 주위를 살피거나 집안에서도 행동도 조심하게 되는 등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대공수사권에 기반한 내사라는 명분으로 자행된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과 불법적인 증거 조작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인 국가폭력을 이미 우리는 많이 봐 왔습니다. 이제 이런 피해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명정한 진상조사와 그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대한 전면개혁이 당장 시작되어야 합니다.

[첨부자료5] 피해자 발언문 2

피해자 발언문 2

최승제(국정원 민간인사찰 피해자 대책위원회)

‘국정원 뿌락치’ 사건을 접한 뒤 첫 감정은 황당함 그 자체였다. 뿌락치가 학교 후배였고, 사찰대상이 바로 내가 대표로 있는 단체, 그 단체의 활동가들, 대학교 선후배였기 때문이다.

다행히 국정원의 ‘뿌락치’ 였던 후배가 공익제보를 하면서 국정원 조작의 전모가 드러났다. 만약 마지막까지 협조를 했다면... 상상한 해도 아찔하다.

제보자는 국정원이 제공한 녹음기가 들어있는 가방을 메고 다녔다. 회의나 행사, 술자리, 동문들의 모임까지 도청해서 국정원에 전달하면, 국정원 직원들이 자신들의 그림을 그린 뒤, 제보자에게 허위/과장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접한 대학 동문들은 ‘이제 누가 백팩을 메고 오면 의심해야하는 건가?’, ‘동문끼리 술자리도 못 하겠다’ 고 자조 섞인 말을 한다.

필자는 제보자랑 1년 동안 숙소에서 같이 지냈다. 그런데 그 방에 국정원이 CCTV를 설치한 정황이 있다. 한 사람의 일상생활을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국가기관의 수사가 아니라 파렴치한 몰카범의 도촬 행각이다. 이를 언론에서 접한 필자의 아내가 ‘우리 집에도 CCTV 있는거 아니까? ‘라고 묻는다...

국정원은 제보자 아들의 돌잔치에 참석한 동문들의 대화를 도청하게 하였고, 암투병 중인 제보자의 선배를 찾아가서 도청하라고 강요하였다.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이런 짓을 국가기관에서 민간인에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다.

민간인사찰 피해자들은 지난 10월 7일 전·현직 국정원장과 직원 15명을 고소하였다. 주변에서는 ‘너무 힘들지 않겠냐?’ 라는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권력기관이 시민들에게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게 놔둘 수는 없다. 촛불을 든 시민 한명은 약하지만 함께 모여서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검찰개혁의 동력을 만들어냈다. 국정원이라는 음지의 권력기관을 양지로 꺼내는 일에도 시민들이 함께 할 것이라 믿는다.

서훈 국정원장은 더 이상 민간인 사찰의 DNA가 없다고 공표하였지만, 대공수사를 빌미로 여전히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 대공수사권 폐기는 국정원 개혁의 핵심과제이다. 정보기관이 수사까지 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권력기관은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도덕적 제지를 받지 않게 된다. 한마디로 괴물이 되는 것이다.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이 조작해서 민간인들의 삶을 파괴했던 그 괴물의 역사가 끝나길 기대한다.

국정원 사찰 피해자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심신의 피해를 많이 겪고 있다. 하루빨리 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받아서 그 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

[첨부자료6] 시민사회단체 연대 발언문

시민사회단체 발언문

이은미(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저는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인권침해와 간첩조작 같은 불법행위가 오랜기간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수사권 이관을 포함한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국정원 프락치 공작 사건이 드러난 이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회에 진상규명과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했지만, 이 사건이 문재인 정부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탓인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또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를 우선시 하고 국정원 개혁을 사실상 뒷전으로 미루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조차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국정원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 것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원 프락치 공작 사건을 통해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국정원의 조직 생리와 불법적인 수사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을 개혁해야 할 이유입니다.

지난해 말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 되었고 어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하지만 검찰개혁의 첫발은 댄 것입니다. 그러나 집권초기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개혁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국정원법 개정예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작성 용 초고입니다.

- * 아래 진정서의 내용과 증거자료는 보완 중이며 번역이 진행 중입니다. 추후 제출하는 진정서(국문, 영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 ** 본 자료는 현장에서만 배포되는 보도자료 작성 용 초고이므로 파일 등의 형태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진 정 서

I. 당사자의 지위

1. 진정인 임○○는 대한민국에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고, 진정인 최○○는 ○○대학교 ○○학과 강사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진정인들은 통일경제의 필요성을 알리고,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진보적 학술단체인 ‘통일경제포럼’의 회원입니다. 진정인 최○○는 ‘통일경제포럼’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진정인들은 이하에서 상세히 살펴보듯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나아가 국정원은 사찰을 통해 취득한 사실을 조작하여, 진정인들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자로 조작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정원의 사찰과 사건조작 행위는 프락치(민간 정보원, 이하 ‘제보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 사건”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II. 국가정보원 권한남용의 역사

3.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이 다룰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국외 정보 및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한정됩니다. 국정원의 수사권 또한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대상으로 하는 ‘대공수사권’과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관한 수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4. 국정원은 다룰 수 있는 정보와 직무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공수사’를 명목으로 민간인 사찰을 통해 국내 민간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정권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공안사건을 조작해왔습니다. 1960년대 독재정권 및 군사주의 정권 시절 국정원의 전신이었던 ‘중앙정보부’는 ‘김대중 납치사건’, 반정부 인사 사찰 및 탄압, 선거개입, ‘동백림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 정치 분야에 개입했고, 수많은 사건을 조작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을 탄압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기획부’로 개편되었지만, 개편된 ‘국가안전기획부’ 역시 마찬가지로 정권에 복종하고 자신의 권한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공안사건을 조작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안전기획부는 김근태 고문사건, 수지검 사건 조작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지속적으로 간첩 조작과 정치공작을 일삼았습니다.

5. 1999년 국가안전기획부는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으로 그 구조가 ‘개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국정원은 자신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반인권적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과 같이 무고한 시민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우기 위해서 민간인 사찰과 사건 조작을 자행 했습니다. 국정원은 심리전단 소속사이버팀을 통해 여당을 옹호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비판하는 등 조직적인 인터넷 여론 조작으로 정권에 부역하는 정치공작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2010년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튀를 미행·촬영하다가 발각되었고, 2015년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으로부터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감청할 수 있는 원격제어시스템(RCS)을 구입하고 일반시민들도 접근할 수 있

는 게시글과 파일에 RCS의 스파이웨어를 심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정원은 약 7년간 패킷감청을 통해 특정 민간인을 감청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위 국정원의 패킷감청이 감청 대상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6. 이상과 같이 국정원은 군부독재시절부터 그 이름만을 달리하였을뿐 국정원의 권한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정치공작과 대공사건조작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그 과정에서 민간인을 감시·도청·촬영하고 그 밖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해왔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일련의 불법행위들이 ‘대공수사’의 명분아래 행해진 적법한 행위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7. 국정원의 운영을 비롯한 국정원에 관한 모든 정보들은 철저히 비공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얼마나 더 많은 반인권적 행위와 그로 말미암은 피해자들이 존재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III. 사실관계

A. 사건의 요지

8. 제보자는 2006.경 서울대학교에서 단과대학 학생회장을 하던 중 군 입대 후 지속적으로 ‘학생운동하던 장병들은 자진신고하라’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학생회 활동을 하였던 점’을 기무사에 보고했습니다. 이후 국정원은 기무사와 함께 이 사건 제보자의 학생운동 행적과 함께 활동을 하였던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9. 국정원 직원 3명은 제보자가 제대한 이후인 2014. 10.경 2~3개월 이상 1~2주 간격으로 이 사건 제보자를 찾아와 ‘학생운동을 함께 했던 사람들의 동향을 알려주면 보상을 하겠다.’라며 돈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제보자

는 자신의 사업에 집중해야 하고 국정원과 교류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국정원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은 제보자를 만날 때마다 30만원에서 50만원 가량의 금전을 지급하며 강압적으로 제안을 수락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제보자는 자신의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빚이 쌓이고, 결혼하여 아이까지 출산하게 되자 결국 2015. 4.경 국정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10. 국정원은 2014. 10.경부터 2019. 8.경 까지 약 5년 동안 제보자를 ‘프락치’로 이용하여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자행 했습니다. 국정원은 제보자를 회원이 1,500여명에 이르는 시민사회단체인 ‘통일경제포럼’에 가입하게 하여 활동하게 함으로써 단체의 모든 모임과 회식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제보자에게 녹음기와 장비를 지급하며 회원들의 개인적인 대화를 전부 녹음·촬영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이 담긴 총합 100회 이상의 진술서와 3회에 걸쳐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하여 통일경제포럼 회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우려 했습니다.

11. 제보자는 국정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상태로, 자신의 동료들을 사찰했고 이에 대한 죄책감 및 불안감으로 인해 안면마비 증세를 겪기까지 했습니다. 5년간 이어진 민간인 사찰과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에 회의를 느끼게 된 제보자는 ‘프락치’ 활동을 그만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은 제보자에게 ‘우리는 만만한 조직이 아니다’, ‘너는 잃을 것이 많다’고 말하며 제보자가 활동을 그만둘 수 없도록 협박했습니다. 제보자는 고민끝에 2019년 8월 26일 언론사 ‘머니투데이’를 통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제보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한 사안이라며 자신들의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직에 대한 내사사건”으로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 국가정보원의 구체적 범죄행위

i.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조작을 위한 사찰 지시

12. 제보자에게 사찰과 허위진술을 지시한 국정원 직원들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기획하여, RO라는 허위의 조직을 만들어내었던 수사팀인 국정원 경기지부 공안2팀 소속 직원들이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제보자에게 “경기 동부 RO 중에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일부이고, 아직 잔당이 남아 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그 잔당을 일망타진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제보자에게 사찰을 지시했습니다.

13. 한국의 대법원은 지난 2015년 1월 22일 ‘RO’라는 조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정원은 대법원 판결로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확인된 ‘RO’의 잔존 세력이 남아 활동한다는 가상의 사실을 주장하며, 제보자에게 혐의가 없는 사람들을 사찰하라 지시한 것입니다. 국정원은 제보자에게 “‘할 수 있는’ 친구 OOO부터 시작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유인하자.”라며 사찰을 지시했는데, 이는 국정원이 혐의가 있는 사람을 조사 또는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기획하려 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ii. 사찰장비 지급과 혐의 없는 사람에 대한 사찰 지시

14. 국정원은 제보자에게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기 위해 ‘RO 사건’의 정보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사용했던 제품이라며, 제보자에게 가방에 든 녹음기와 ‘하이큐’라는 앱을 설치한 태블릿 PC를 제공했습니다. 국정원은 제보자가 자신의 아들 돌잔치에 초대할 사람도 정해주면서 대화를 녹음하도록 지시하였고, ‘통일경제포럼’의 모임 뿐만 아니라 ‘A대 민주동문회 송년회’, 지인의 ‘결혼식’ 등 사적인 모임을 포함한 모든 모임에 참석하여 대화를 녹음하게 했습니다. 또한 국정원은 근처에서 제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감시·촬영했습니다.

15. 국정원은 2017년 초에 성과가 부족하다며 제보자에게 ‘통일경제포럼’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정원은 제보자에게 카메라장

비와 노트북을 구매해주고 촬영할 대상자 명단을 정리하여 주었으며, 촬영할 대상자와의 인터뷰 내용도 정해주었습니다. 제보자는 ‘국가폭력 피해자’와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한다는 미명 아래 교수, 정당, 시민단체, 작가, 종교인 등을 촬영하였고, 촬영된 동영상은 국정원에 제공되었습니다.

16. 국정원은 2017년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통일경제포럼’의 회원과 신청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단둥기행에도 개입했습니다. 국정원은 기행팀 숙소의 맞은 편에 숙소를 마련하고 촬영 장비를 구비했으며, 일정 전체를 따라다니며 대화를 녹음하거나 및 촬영했습니다. 국정원 2019년 2월에 ‘통일경제포럼’의 블라디보스톡 답사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모든 참가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했습니다.

17. 국정원은 지방에 살고 있던 제보자에게 서울에 방을 마련해 주면서 지방에 사는 통일경제포럼 대표인 진정인 최○○에게 그곳에서 함께 지내자고 유인하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제보자와 진정인이 함께 지내게 되자, 처음 한 달 간 가짜 CCTV를 설치하고 진정인이 눈치 채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은 한 달 동안 진정인이 눈치를 채지 못하자 “진짜 CCTV 설치해도 되겠네”라고 말하며, 제보자에게 “최○○가 옷장에서 책을 꺼내 본다. 확인해봐라”라고 하는 등 제보자에게 CCTV가 설치되어있지 않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알려주며 사찰을 지시를 했습니다.

18. 국정원은 제보자에게 사찰할 사람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제보자가 국정원이 지정하는 사찰할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경우,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 경기지부 조사실 컴퓨터 화면에서 사찰을 해야 할 사람을 검색하여 관련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리스트’가 존재했고, 리스트에는 개인의 사진과 프로필, 성향 등 상세하고 많은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제보자에게는 얼굴 사진과 약력, 과거 활동 등이 나오는 부분을 보여주며 사찰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해주었습니다.

19. 국정원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보자나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고려

대학교 민주동문회 명단을 보여주며 사찰할 사람이라 숙지시키고 그 사람들의 연락처를 제공했습니다. 제보자가 잘 기억하지 못하자, 나중에는 같이 쓰는 이메일(dnflsmsqnfkej@gmail.com)으로 명단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위 민주동문회 명단에는 실제 저명 정치인들도 있었고, 교수, 변호사들이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iii. 가상의 ‘지하혁명조직’ 창설 및 사건 조작

20. 국정원 직원은 2015년 4월경 제보자에게 “임팩트 있는 일이 있고, 그 안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 공안검사에게서 오케이 사인이 나오고 공안 판사랑 얘기해서 영장만 나오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 임팩트 있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제보자와 같이 활동했던 학교 친구가 제보자가 운영하는 캠핑장을 방문하겠다고 연락이 오자, 국정원 직원은 ‘그 친구가 소개시켜 준 이름 모를 B대 출신 혁명가가 와서 제보자가 가상의 지하혁명조직의 조직원이 되는 것으로 기획하자’라며 제보자에게 사건 조작을 지시했습니다.

21. 제보자는 국정원 직원의 지시에 따라 녹음할 대본을 미리 작성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제보자의 친구가 캠핑장에 오는 날 소화기 모양의 감시카메라 두 개를 가져와서 설치하고, 제보자에게 방파제에 가서 낚시를 할 것을 유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제보자에게 낚시장소로 유도하기 전부터 녹음기를 켜 대화를 녹음하라고 지시하며 녹음 내용이 정확하게 안 들리도록 녹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낚시장소의 바람소리가 더 컸기 때문에, 사람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녹음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제보자는 녹음된 파일을 국정원에 제공했고, 국정원은 그 파일을 범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포렌식 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는 국정원 경기지부에서 낚시 장소의 대화가 지하혁명조직에 가입하는 대화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22. 기자인 제보자의 지인이 공군 관련 취재를 하고 있다며 잠시 만나자는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이 때에도 국정원은 제보자에게 그 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제보자에게 그 지인이 취재 기사를 데스크에 보내고 있던 것을 제보자에게 “기자로 활동하면서 군사정보를 빼내어 조직 윗선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라 지시했습니다.

23. 2016년 11월 23일에 제보자는 A대 민주동문회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그룹 메신저)에 송년회 일정이 올라왔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민주동문회의 송년회 일정이 채팅방에 올라오기도 전부터 이미 모임 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국정원 직원은 제보자의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 전체를 촬영했고, 국정원 직원의 지시로 제보자는 지인 간 근황을 주로 이야기 하는 평범한 송년회의 당일 대화도 모두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은 근처에서 송년회를 지켜보았습니다.

iv. 협의의 조작

24. 국정원을 제보자에게 5년간 총 100회 이상 진술서와 3회에 걸친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진술서와 진술조서는 국정원 직원이 미리 메모해 온 내용 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었고, 사실과 다르게 허위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5. 국정원이 제시한 방향에 따라 제보자는 사찰한 지인이 B대 출신의 지하혁명조직원과 접선하여 조직원이 되었고, B대 출신 지하혁명조직원은 중국으로 밀항했다는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보자는 위 허위의 진술서에 ‘A대 B대 XXXX 지하혁명조직’이라는 이름의 가상 조직이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암약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제보자에게 ‘이 기획은 너랑 나라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갖고 가는거야’라고 했고, 몇몇 수사관들은 가상의 B대 출신 지하혁명조직원을 찾겠다는 등 제보자가 작성한 진술서가 허위라는 점을 모르는듯 했습니다.

26. 국정원은 앞서 언급한 단둥기행에 대해서도 제보자에게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해줍니다. 국정원 직원은 기행의 마지막 날, 단둥역에서 일행 중 3명이 함께 역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중 1명이 역 밖에 서서 담배를 피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보며 “한명이 망을 보고 두 명이 북한공작원과 접선한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제보자로부터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27. 또한 국정원 직원은 제보자를 통해 사찰한 민주동문회의 평범한 송년회를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선배들이 후배들을 관리하는 차원”의 모임으로, 통일경제포럼 블라디보스톡 기행 준비를 위한 답사 일정에 변경이 생기자 이를 ‘북한 공작원을 만나기 위해 정보기관을 따돌리려는 목적으로 일정을 자주 바꾼 것’으로, 답사일정에서 일행 한 명이 마켓에 다녀온 것을 “북한 공작원을 만나기 위해 건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장소를 변경해 가면서 미행을 따돌리며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아 대오에 복귀하고 다시 국경을 넘었다는” 등 제보자에게 조작된 사실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28. 국정원 직원은 제보자가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 항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미리 확인한 녹음 파일과 영상 등을 활용하여 진술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을 한 장 정도로 요약해 제보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며 제보자가 국정원 직원에게 ‘없는 일인데 이렇게 써도 되냐’고 묻기도 했지만, 국정원 직원은 ‘불법이지만 니가 진술을 이렇게 하면 합법이 돼’라고 말했습니다.

v. 대가성 자금 및 불법적 자금 지급 등 회유, 립살롱 접대 및 성매매 강요

29. 국정원은 제보자에게 “나중에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법정에서 사찰 대상의 위법행위를 증언하면 RO 사건 제보자에게 준 10억 여원과 유사한 금액을 주겠다.”는 말을 하며 제보자를 적극적으로 회유했습니다. 국정원은 제보

자에게 ‘프락치’ 활동의 대가로 한 달에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가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할 때마다 50~80만원을 추가 지급했습니다. 국정원은 2014. 10. 15.부터 2019. 8. 19.까지 제보자에게 약 123회에 걸쳐 대략 1억 6,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30. 국정원은 제보자에게 사건이 개시되면 신변 보호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은 관련자들로부터 제보자를 평생 보호해줄 것이고 외국으로 보내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은 제보자에게 재판이 시작되면 외국에 있다가 재판일에만 출석하면 된다면서 ‘RO’사건의 정보원이 그런 방식으로 일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국정원은 재판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것이고 재판 절차가 끝나면 모든 잔금을 지급할 것과 제보자에게 안전한 거처 및 평생직장을 알선해 주겠다고 제보자를 회유했습니다.

31. 국정원은 제보자를 회유하기 위해 술을 대접하거나 성매매를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제보자는 2014년 ‘사업’을 제안받은 날 그리고 2015년 10월 경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한 날 등 수차례 국정원으로부터 룸살롱에 초대받아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값은 모두 ‘법인카드’로 지불되었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제보자에게 ‘성매매’도 권유했는데, 성매매의 비용은 흔적이 남지 않도록 국정원 직원이 현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제보자가 죄책감에 성매매를 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면, 국정원 직원은 의리를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종용했습니다.

IV. 국제인권법의 위반

A. 국가정보원의 국가보안법 악용

32. 국정원은 제보자가 폭로한 이후 사찰행위와 사건조작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적법한 내사’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그 추상성과 악용의 여지로 국제인권법에 부합하지 않아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법률입니다. 국정원의 사찰 및 사건조작 행위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취급하여 감시한 것으로 국제인권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3.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상 인권을 침해할 위험을 가진 법률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5년 제4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 견해에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남용의 소지가 가장 큰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CCPR/C/KOR/CO/4, para 48-49).

“사상이 적국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단지 일치한다거나 적국에 대한 공감을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 사상의 표현을 제한할 수 없다”(CCPR/C/KOR/CO/4, para 49)

34.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는 특별 절차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프랑크 라뤼 전 유엔 의사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011년 한국방문조사 보고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정부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가 “모호하고 공익 관련 사안에 대한 정당한 논의를 금하며 오랜 기간 인권,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긴 역사”가 있으므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A/HRC/17/27/Add.2, para 97-98).

35.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4년 8월 23일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국가보안법을 명목으로 한 무고한 사람에 대한 사찰,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B. 의사와 표현의 자유 침해

36. 국가안보는 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행사로 인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는 예외적인 사례에서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위협은 적어도 침해자의 명확한 능력 수립과 예를 들어 폭력의 사용을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것과 같이 국가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야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단지 국가안보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미약한 근거를 토대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행사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E/CN.4/1996/39/Add 1, para 16)

37. 진정인들이 속한 통일경제포럼이란 단체는 서울시의 후원을 받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평화통일교육을 진행한 시민단체입니다. 국정원은 위 시민단체의 활동이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인들을 비롯한 단체 구성원들을 사찰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처벌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국정원의 행위는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내세워 진정인들의 의사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자 표현행위를 제재하는 것으로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및 자유권규약 제19조에 위반됩니다. 국내법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위반된 행위이기도 합니다.

C. 양심과 신념의 자유 침해

38. 의사와 표현의 자유와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는 밀접하게 관련된 권리입니다. 종교나 신념에 근거한 편협성, 고정관념, 오명, 차별 및 폭력에 대한 선동 등은 의사와 표현의 자유 및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동시에 침해합니다(A/HRC/31/18, para 73). 모든 사람은 특정한 신념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 받고, 이러한 권리는 비례적이지 않거나 차별적으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CCPR/C/21/Rev.1/Add.4).

39.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정원은 진정인들을 비롯한 평화통일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자로 취급하고, 혐의사실이 없음에도 이들을 사찰하고 처벌하기 위해 이들의 행동과 표현을 왜곡했습니다. 이러한 국정원의 행위는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특정 사상 또는 양심을 표명한 행위

를 침해한 것으로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자유권규약 제18조 및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 위반됩니다.

D. 프라이버시권 침해

40. 국정원의 사찰 및 사건조작행위는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자유권규약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들의 프라이버시권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하는 것은 규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국내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허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자유권 규약 일반권고 16, para.3). 또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정보는 “규약상 사회의 핵심적인 관심사항”이어야 합니다(HRI/GEN/1/Rev.9 (Vol. I), General Comment 16, para.7).

41. 국정원이 진정인을 비롯한 사람들을 사찰하여 정보를 수집한 목적은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규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악용하여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조작한 행위입니다. 또한 제보자가 사찰한 내용은 어떠한 범죄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 사생활로 사회의 핵심적인 관심사항이라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사찰 및 사건조작행위는 세계인권선언 제12조 및 자유권규약 제17조 및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도 위반됩니다.

42. 2019년 7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언론보도 성명을 통해 정보기관의 감시사찰조치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방대한 양의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하면서도(para. 5), 2017년 6월 서훈 국정원장 취임 후 “인권 분야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para. 7).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정권의 변경과 무관하게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E.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한 억압적, 안보적 시각에 기초한 조치

43. 국가정보원의 사찰 및 사건조작행위는 테러에 대한 대응 또는 국가의 안보를 명목으로한 국가기관의 범죄행위로, 테러 대응에 있어 국가가 준수해야할 기본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정보원의 사찰 및 사건조작행위는 1) 억압적, 안보적 접근방식에 기반한 대테러 조치라는 점, 2) 금지된 차별적 프로파일링에 해당한다는 점, 3)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점에서 국제인권법에 위반됩니다.

44. 반테러 특별보고관은 테러에 대한 대응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억압적, 안보적 시각에서의 접근 방식이 인권의 침해 등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의 모든 조치가 국제인권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A/HRC/31/65). 이 사건 사찰행위의 목적은 특정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처벌하려는 것으로, 이는 국제인권법이 금지하는 억압적, 안보적 시각에 기반한 테러대응 조치에 해당합니다.

F. 차별적 프로파일링 및 적법절차의 원칙 위배

42. 반테러 특별보고관은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적 프로파일링이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A/HRC/4/26). 내사 및 수사 등이 차별적 프로파일링에 기초하는 경우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정보원은 통일경제포럼 회원들을 비롯한 특정한 사람들을 프로파일링하고, 감시리스트를 만들어 사찰과 처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프로파일링은 프라이버시권과 비차별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43. 특히 반테러 특별보고관은 ‘감시 리스트’ 또는 ‘프로파일링’에 근거한 감시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해야함을 강조합니다. 리스트 또는 프로파일링에 포함된 개인은 자신이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감시의 대상에 포함되었는지를 통지 받고 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A/HRC/13/37).

진정인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국정원으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고, 시정의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는바 국정원의 사찰 및 사건조작행위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44. 또한 국정원의 사찰 및 사건조작행위는 국정원의 정식 직원이 수행한 적법한 감시조치가 아닙니다. 국정원은 민간인인 제보자의 경제적 상황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제보자에게 사찰과 사건조작을 지시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민간인 정보원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외부 견제장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의 사찰 및 사건조작행위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범죄행위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45. 한편 제보자가 국정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한 사찰행위와 조작행위는 국정원이 직원 등에게 지시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였습니다. 즉 국정원은 자신이 직접하는 경우 법에 위반되어 처벌받을 사찰과 사건조작을 민간인 제보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률의 통제를 우회하기 위해 민간인 정보원을 활용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V. 결론 및 요청사항

46. 진정인들은 사회와 평화 통일에 기여하고자 통일경제포럼에 가입하여 활동한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진정인들은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국정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하고 범죄자로 내몰린 사실에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특히 신뢰했던 제보자가 국정원의 정보원이었다는 것은 진정인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진정인들은 국정원의 사찰 및 사건조작행위가 드러난 이후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47. 그러나 국정원의 사찰 및 사건조작 혐의에 대해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지만 검찰은 증거확보를 위한 강제조사를 개시하지 않고 있고, 국정원 내부에서 관련자 누구도 징계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증거확보를 위해 제보자가 국정원에게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류를

정보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즉 국정원이 자신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48.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의 개혁도 미진합니다. 국회는 2018년 1월 국정원의 정보수집범위를 축소하고, 대공 수사권을 이관하고,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며,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정원법이 발의했지만, 여당과 야당의 의견 차로 위 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 또한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49. 진정인들은 본 진정서를 접수하는 특별보고관들이 국정원의 사찰 및 사건조작행위가 국제인권법 상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임을 알리는 보도자료 및 서한을 발표해주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특별보고관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아래와 같은 권고를 긴급조치로서 내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a) 진정인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진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정원의 사찰 및 조작행위에 따른 피해자들의 인권 유린의 책임을 남김없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국정원의 사찰 및 조작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및 증거를 신속히 확보할 것
- 국정원의 사찰 및 조작행위 관련자들에 대해 신속히(지체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
-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및 조작행위를 전수조사하고 관련 조사결과를 공개할 것

(b) 진정인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정의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정원의 사찰 및 조작행위 관련 책임자들을 국제인권법에 부합하게 엄중히 처벌할 것

(c) 진정인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배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 등 국정원의 사찰 및 조작행위에 의한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d)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국정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회유한 프락치(민간정보원)를 활용하는 방식의 내사, 수사를 금지할 것
-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작성한 프로파일링 및 감시 리스트를 삭제할 것
- 국정원을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외정보 수집기관으로 개편할 것
- 국정원의 보안업무 기획, 조정 권한을 폐지할 것
-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폐지할 것
- 범죄에 대한 수사권-특히 국가보안법 수사 권한-은 검찰 또는 경찰에 이관할 것
- 국정원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 국가 정보위원회의 역할 제고 등 민주적, 독립적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
- 국제인권법에 어긋나는 현행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고,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다른 안보 수단을 마련할 것